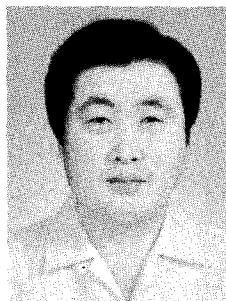


企劃特輯

'88漁港懸案

1, 漁港法  
改正



與件, 그 어느 때보다도 急變

# 漁港구분 基準부터 새롭게

기호준(水產廳事務官)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386개의 크고 작은 어항들이 해안 또는 도서에 흩어져 있음으로써 연근해어업은 물론 원양어업에 이르기까지 성장과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정부가 1969년 5월 19일 어업 근거지인 어항을 계획적으로 건설하고 그 시설의 이용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수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어항법을 제정 시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 능력이 증대되고 있어 투자 재원의 확보가 용이해지고, 수산업도 어선 세력과 어로 기술의 발달 등으로 여건이 크게 변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어항법도 발전적·미래지향적으로 검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

며 이때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하여 보았으면 한다.

## 어항종류의 구분 기준 의 강화

어항의 종류 구분 기준에 따라 지리적·경제적·사회적인 조건을 포함을 시켜 1~3종의 조정과 1종어항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 생활근거지가 되고 여가생활 등이 가능한 곳을 골라내어 3종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직접 투자 개발 토록 한다.

##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의 신축성

세부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황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

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추가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어항건설사업소의 설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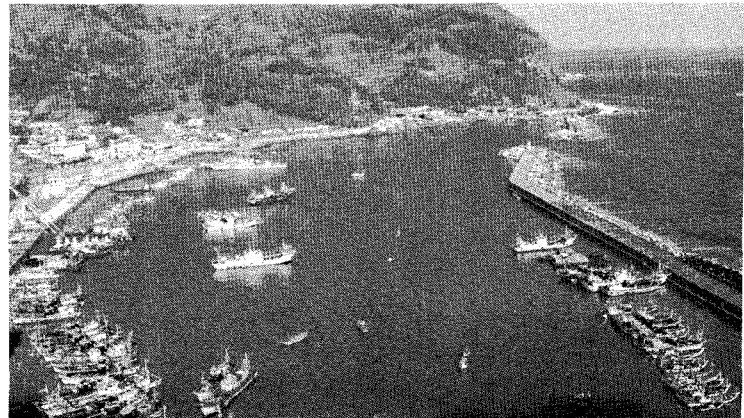
어항개발사업의 정책적 기능과 집행적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적·계획적 기능을 담당하고 일선기관은 일상적·집행적 기능을 담당토록 한다. 이에 따라 각각 맡겨진 기능을 정상적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어항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 ■ 어항의 건설, 관리 및 연구체제의 확립.

어항건설에 대한 현지조사와,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공을 위한 설계·건설한 시공·품질관리의 연구 각종 시험의 실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경제적이며 효과적이고 영구적인 어항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항협회에 어항건설 과정 및 관리연구에 관한 용역사업등의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어항협회가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부의 연구기능을 담당토록 함이 좋을 것이다.

## ■ 정부투자의무의 강화

어항개발은 건설기술 개발의 어려움 및 대규모 건설비의 소요·시설의 공공성 등의 특성으로 국가이외의 자가 건설하기에는



사업상 불가능하며 투자효과의 계량적 측정의 어려움, 정부의 공업우선개발추진 등으로 투자우선 순위가 뒤로 쳐져서 미흡한 실정이나, 매년 태풍, 폭풍 등의 내습으로 엄청난 인명과 어선등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투자우선순위를 앞당겨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 ■ 어항시설의 관리에 관한 제정근거조문의 신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한 어항은 그의 유지·관리의 적정화로 어민의 이용도가 높아야 하므로 상황의 변화에 대해 신축성 있는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수 있도록 수산청장에게 그 규칙의 제정·변경·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 ■ 어항시설 관리법 강화

어항구역내의 부지와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국유재산법에 적용되고 어항법에 규정된 사항은 어항법이 적용되므로 어항법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어항시설은 수산청장이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 어항시설관리체계의 개선검토

어항시설의 관리를 사용허가권과 관리권으로 구분하여, 사용허가권은 중앙행정기관이 관장하고 시설관리권은 지구별수협에 위임하여 시설관리자가 시설의 사용·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항의 건설은 중앙행정기관이 관장하고 시설관리부문은 실질적 이용자인 지구별수협이 관장토록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

## ■ 어항시설관리권에 대한 정의규정

어항시설관리권의 범위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역별수협장이 관

리권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어항시설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어항시설중 자유 사용시설에 대한 항구적·지속적 이용으로 수익 또는 편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시설 유지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상선 등의 접안료 징수규정 마련

현재는 시행을 유보하더라도 미래의 여건 변화를 대비하여 상선 등의 어항 이용시 접안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 배제

어항구역내에 있는 공유수면은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수면 사용허가·접용허가 등으로 어항 개발저해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 공유수면매립법 적용 배제

어항구역내에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그 지역내에서는 수산청장의 계획하에 어항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항만법의 적용 배제

어항구역과 항만구역이 중복되는 경우 항만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어항개발에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고 각종  
법에 의한 개발 저해  
요인도 제거하여  
어항개발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토석채취장의 지정

어항건설자재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청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토석채취장을 지정하는 경우 산림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토록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도시계획법의 적용 배제

어항구역내에는 어항법에 의거

구역내의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용도가 정하여 지므로 별도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 결정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시설 이용 관리에 지장이 없다.

### 어항법에 의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항만법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나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어항개발의 필요성과 긴급성에 대하여는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이 다 알려지고, 또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인명과 어선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무한한 해양자원의 개발을 촉진하여 식량자원의 확보와 국민여가시설의 마련 등을 위해 서도 어항개발은 시급하다.

정부는 어민들의 고충해결과 산업발전 전략면에 있어서도 수산업에 투자할 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더욱 더 어항개발에 투자를 확대하여야 하고 각종 법에 의한 개발 저해 요인도 제거하여 어항개발을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어려운 환경적 여건에서도 어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중앙기관과 일선 현장에서 진력하시고 계시는 개발역군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